
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

1

□ 평가개요

-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
 -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상생협력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
- 평가절차
 - 평가 대상기관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이하 “중기부장관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중기부장관은 매년 그 평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□ 평가기준

- 평가 대상기관 유형 구분 : 한국석유공사(공기업형/공기업 I)
- 평가내용 : 100점 만점[비계량/계량지표(75점), 체감도 조사(25점)]
- 평가등급(5개 등급)
 - 최우수 : 96점, 우수 : 90점, 양호 : 70점, 보통 : 70점 이상, 개선 : 70점 미만

□ 평가결과 : 보통